

특허사용협약서



경상북도

특 허 사 용 협 약 서

- 사 업 명 : 2026년 동해안 부자어촌만들기 시범사업 인공어초 설치공사(특허공법)
- 대 상 지 : 영덕군 병곡면 병곡2리
- 특 허 명 :
 - 트리톤A형어초 (*특허 제10-1199870호)
 - 트리톤블록 (*특허 제10-1692481호)
- 특허 보유자(또는 협약대표자) : 주식회사 창신산업개발
- 발주기관: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동해안 부자어촌 만들기 시범사업(영덕군 병곡면 병곡2리)인공어초 설치공사(특허공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기준」에 따른 요율을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상기 공사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 ③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붙임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2026년 9 월 11 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지사(인)



특허공법 보유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금길11번길 9

주식회사 창신산업개발(인)



인 감 증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74611-0026383



상 호 : 주식회사 창신산업개발

본 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금길11번길 9

대표이사 장현수

(610212-1398411)

관할등기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70147313140107011910065200823160240TOM10177117711C 10

발급확인번호 CBAQ-0XUT-BHV8

- 1/1 -

